



# 【검토보고서】

2016. 2. 18(목)  
제 266 회 임시회

##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【전문위원 최영인】

# 양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과

- 제안자 : 양주시장(사회복지과)
- 제출일 : 2016년 2월 5일
- 검토일 : 2016년 2월 11일

## 2. 제안이유

-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.7.1.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서 “위기상황”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.
- 구체적인 위기상황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 명시

## 3. 주요내용

-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위기상황의 사유(안 제2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제6호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위기 사유 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나. 정책검토

-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일시적인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
- 위기가정의 대상자 및 친족, 관계인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적격여부 확인 후 금전·현물 지원 내지는 민간기관·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된 금액을 적용함.
- 지원기간은 생계·주거·그밖의 지원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생계·사회복지시설이용·그밖의 지원은 최대6개월, 주거지원의 경우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.
- 전년도 지원실적은 1,058가구 672,436천원이며 단기지원으로 위기상황이 극복되지 않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른사업의 연계방안 및 법령에서 정한 기간연장 등을 통한 지원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.

## 다. 내용검토

- 안 제2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 외에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인한 소득활동 저해 가정, 양육으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가정,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11가지의 사안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
-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긴급지원가정을 적극 발굴·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과다채무로 인한 생계곤란 등 지원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신청자의 적격여부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꼭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## 라. 재정검토

- 2016년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총485,000천원으로 국비388,000천원(80%), 도비14,550(3%), 시비82,450천원(17%)이며
-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1억원가량 감액 편성되어(전년도 집행률 99%) 향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## 다. 형식검토

-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.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## 라. 절차검토

-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